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4. 8.

국토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년 7월 10일, 윤종오의원 등 23인

나. 회부일자 : 2024년 7월 1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2024.7.18.)

상정 · 축조심사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2024.8.1.)

상정 · 축조심사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2024.8.20.)

상정 · 축조심사 · 의결(대안반영 폐기)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2024.8.21.)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축조심사 · 찬반토론 ·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국회의원 윤종오)

전세사기 피해자의 피해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사회적 재난’에 해당하는 전세사기에 대한 충분한 구제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은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는 기준이 협소하고 절차가 까다로워 적용 대상의 사각지대가 많고, 다양한 유형의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구제 대책도 부족한 실정임.

이에 임대인의 채무불이행 의도 요건 등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을 완화하고, 신탁사기피해자를 위한 주택인도소송 유예 및 정지와 공공매입, 다가구주택 피해자를 위한 공공매입을 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보증금반환채권을 매입하는 ‘선구제 후회수’를 포함함. 지자체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포함한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공공위탁관리와 재정적 지원등을 할 수 있도록 함.

전세사기피해자 등에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도록 하며, 이 경우 피해자의 거주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함. 또한 전세자금대출 등으로 이익을 얻은 은행의 기여금 등으로 전세사기 피해지원기금을 조성해 피해지원 대책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없 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

4. 대체토론 요지

(생 략)

5. 소위원회 심사내용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 : 권영진)

김성원의원, 염태영의원, 허중식의원, 복기왕의원, 윤종오의원, 권영진의원, 이연희의원, 황정아의원 및 황운하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9건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함.

6. 찬반토론 요지

(생 략)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에 일부내용을 수정하여 반영함.